

【첨부 2】

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조건

(강동구청 2015. 7. 31)

- 「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」 협의와 관련하여 지하철 시설물이 당초 보도상에 설치 계획되었던 시설물(출입구, 환기구 등)을 재건축부지(공공공지) 내로 이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, 공사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재건축조합과 공사 착수 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.
- 「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」 계획에 의거 지하철 9호선 937 정거장 본체를 제외한 외부출입구#1, 정거장 환기구, 936S2E2 환기구(급기, 배기), 외부엘리베이터,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설계, 공사 등 제반 비용 일체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(이하 “사업시행자” 라 한다) 부담으로 시행 한다.
- 지하철 시설물 이전 설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둔촌아파트 재건축사업과는 별도로 지하철 9호선 922공구 건설공사 일정에 맞추어 시행한다.
 - 지하철 9호선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제출 : 2015.5.31
 - 외부출입구 #1, 환기구 등 시설물 설치 완료 : 2016.12.31.
- 지하철 출입구, 환기구 등 시설물 설치 완료 후 관리부서에 인계·인수하고 점유 토지(공공공지 716㎡)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한다. /
- 공사시행에 따른 토목, 건축, 설비 등 분야별 설계, 시공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는 서울시 설계기준 및 지방서, 9호선 3단계 입찰안내서, 책임감리현장 참여자 업무 지침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근거 사전 계획서를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승인을 득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공사를 추진한다.
- 지하철 시설물 위치 이동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(철도)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결정 변경에 소요되는 측량 등 제반 비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 토록 한다.
- 기타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하철 922공구 건설공사 책임감리, 시공회사,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한다.재건축조합측 착공시기 지연시 정거장 출입구(#1) 및 환기구 풍도는 가벽마감후 후속공정 불가피함. /